

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총무위원회(2024.12.6.)

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
검 토 보 고 서



총 무 위 원 회

[전문위원 박혜진]

#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4. 11. 22.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24. 11. 22.

## 2. 제안사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및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설치·운용 중인 기금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(안)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.

## 3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59조: 재산과 기금의 설치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: 기금운용계획의 변경
  - ↳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% 초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.
-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
## 4.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### ▣ 변경(안)

#### ○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현황

- 연도말 기금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구분	'23년도말 조성액(a)	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			'24년도말 조성액 e=d+a
		수입 (b)	지출 (c)	증감 (d=b-c)	
계	80,838,769	43,700,589	61,000,000	△17,299,411	63,539,358
재정안정화계정	68,135,313	43,279,497	60,000,000	△16,720,503	51,414,810
통합계정	12,703,456	421,092	1,000,000	△578,908	12,124,548

- 자금운용계획

(단위 : 천원)

수입계획-				지출계획			
항목	변경 (3회 추경)	당초 (2회 추경)	증감	항목	변경 (3회 추경)	당초 (2회 추경)	증감
합계	124,539,358	83,442,928	41,096,430	합계	124,539,358	83,442,928	41,096,430
전입금	41,000,000	-	41,000,000	예치금	63,539,358	22,442,928	41,096,430
예치금 회수	80,838,769	80,838,769	-	기타지출	60,000,000	60,000,000	-
이자수입	2,700,589	2,604,159	96,430	예수금	1,000,000	1,000,000	-

-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

(단위 : 천원)

구분	예치(탁)처	예치금 및 예탁금				비고
		'22년도말 현재액	'23년도말 현재액(a)	'24년도말 현재액(b)	증감 (b-a)	
예치금	농협	134,763,067	80,838,769	63,539,358	△17,299,411	

## 5. 검토의견

### ▣ 통합재정안정화기금 <기획예산담당관> p.24

- 이 기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 및 「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2020년에 설치하였음.
- 이 기금의 목적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함임.
- 변경안 내용으로는 '24년 기금결산 결과 총수입은 1,245억 3,935만 8천원으로 발생 사유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10억원, 예치금회수금액 808억 3,876만 9천원과 이자수입 27억 58만 9원임.
-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예비비 잔액과 보조금 반환금 및 기타 집행잔액으로 보임.
- 지출계획은 일반회계로 600억원을 전출, 농업발전자금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10억원으로 24년도말 조성액은 635억 3,935만 8천원임.
- 지난해 세수평크 56.4조, 2022년에 이어 연속된 세수결손과장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89억원, 시군조정교부금 11억 4,200만원, 국고보조금 3억 6,086만 4천원이 줄어든 만큼 비상금 격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
-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군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금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,
-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으며, 일반회계의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할 것이며,
- 기금을 단순히 남는 돈으로 치부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는 중·장기 세출 변화 예측에 맞춰 적정 규모에 대한 연구와 설정을 통해 중·장기적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## 6. 관련법령

#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4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##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(기획예산담당관) [시행 2020. 9. 29.]

제4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(이하 “재정안정화 계정”이라 한다)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.
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적립해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일반회계 세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입액의 합이 최근 3년간 해당 세입의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. 다만, 가목의 경우 “합”을 “증가율”로 “평균금액의 110퍼센트”를 “평균 증가율의 10퍼센트”로 본다.

가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: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
나.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의3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: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
다. 「지방교부세법」 제3조에 따른 보통교부세: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2.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3.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

### 지방자치법

[시행 2024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